

의안번호	2209017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.
추계번호	25C1431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6조의3 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 제9항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규모, 위탁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 등 수탁자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·운영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8조 (비용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3 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 제9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 (비용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16조의3) 개정안에 따라 위탁계약이 종료된 공립요양병원에 지방
자치단체가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경우 지방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
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비용 정산을 받을 대상 시설의 요건과
정산 규모 등을 알 수 없음

- 안 제16조의3제10항은 정산의 방법·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시설 선정 요건과 정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공립요양병원은 위탁 71개소, 직영 2개소 등 총 73개소임
- (안 제18조)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·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도입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사업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,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
 -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